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현수막 제작 과업내용서

2025. 2.



안산문화재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I

과업목적

본 과업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 간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계약상대자 간 옥외홍보물 제작, 설치, 보수, 철수, 안전관리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추진방향

- 적재적소 옥외홍보물 배치로 축제 홍보 효과 극대화
- 축제 메인디자인 노출로 관내 축제 분위기 조성
- 설치 후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시민 보행환경 안전 확보

III

과업개요

- 과업명: 제22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현수막 제작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2026. 5. 6.(수)
- 과업범위: 홍보현수막 제작, 설치, 보수, 철수, 안전관리
- 추정금액: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2인 견적 수의계약
- 참가자격
 - 안산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자
 - 현수막 직접생산확인증명서(5512170601)
 - 옥외광고사업(260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IV

과업내용

□ 홍보현수막 제작목록

구분	제작명	규격	게시기간	수량(개)
계				223
1	안산시 행정게시대(저단)	7,000*700mm	2026. 4. 6.(월)~5. 3.(일)	20
2	안산시 가로등현수기	600*1,700mm	2026. 4. 4.(토)~5. 3.(일)	130
3	안산시 육교현판	12,000*1,200mm	2026. 4. 6.(월)~5. 3.(일)	10
4	안산시 홍보탑	1,150*7,000mm	2026. 4. 6.(월)~5. 3.(일)	4
5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야외게시대	3,000*4,000mm	2026. 4. 6.(월)~5. 3.(일)	1
6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전시동 외벽	3,000*8,000mm	2026. 4. 6.(월)~5. 3.(일)	1
7	김홍도미술관 야외게시대	2,500*4,400mm	2026. 4. 6.(월)~5. 3.(일)	1
8	소극장 보노마루 외벽	2,700*5,300mm	2026. 4. 6.(월)~5. 3.(일)	1
9	안산문화광장 거울 4면	5,500*3,000mm(2ea) 2,600*3,000mm(2ea)	2026. 4. 6.(월)~5. 3.(일)	4
10	안산문화광장 다리 2면	6,000*5,000mm	2026. 4. 6.(월)~5. 3.(일)	2
11	스텝식당 현수막	5,000*900mm	2026. 3. 4.(수)~4. 3.(일)	2
12	중앙역 현수막	4,500*2,800mm	2026. 4. 6.(월)~5. 3.(일)	1
13	고잔역 현수막	5,000*4,200mm	2026. 4. 6.(월)~5. 3.(일)	1
14	교통통제 현수막	6,000*900mm	2026. 4. 6.(월)~5. 3.(일)	40
15	행사 현수막	9,000*1,000mm	소요 발생 시	5

※ 설치(크레인포함) 및 철거·유지보수 등 현수막 제작 및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

※ 상기 제작규격과 수량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발주기관” 이 규격을 재측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는 현장에서 규격을 재측정해야 함

□ 규격, 재질 및 사양

- 기본 사양, 규격, 디자인은 “발주기관” 에서 정한 바에 의함
- 현수막 시안은 “발주기관” 에서 제공한 시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이 일부 변경 또는 시안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 현수막 가장자리는 열처리, 재봉 등으로 천이 풀리지 않도록 하며 문자나 색상은 섬세하게 제작

□ 설치 및 철수

-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이 지정하는 장소와 기간동안 옥외에 축제 사전 홍보용 현수막 설치
- “계약상대자” 는 시 관할 게시장소에 홍보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시 관리기준 준수(안전수칙, 신고필, 만료기간 도래 시 즉시 철거 등)
-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이 시 관할 육교현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교현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는 설치한 모든 홍보용 현수막을 촬영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 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는 설치한 모든 홍보용 현수막을 2026. 5. 6.(수) 오전 이내 철거

□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 는 옥외에 설치된 홍보용 현수막 설치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하고 추적 관리
- “계약상대자” 는 설치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하여 옥외광고업 등록과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이 시민 안전에 우려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 즉각 후속 조치 시행
→ 재계첩, 재출력, 수정 등에 대한 비용 청구 불가

V 추진일정

구 분	2월			3월				4월				5월	
시청 관할 게시대													철수
재단 관할 게시대													철수
교통통제 게시대													철수
행사 현수막						수	시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가능

VI 수행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를 준수하되 “발주기관” 과 상호 발전적·전략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 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시행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은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시한다.

□ “발주기관”의 의무

- “발주기관”은 과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도·감독에 협조하며 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위임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

□ 저작권

-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전

- “계약상대자”는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안산시 등 규정, 규칙, 기타 법령, 지침을 준수 및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의 사정변경 혹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당 조항에서 정하는바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이미 용역을 완료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하였을 경우, 검사를 받은 기성부분
 - “발주기관”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과 지출 증빙이 가능한 투입비용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대방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선 및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사항이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귀책사유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납세 의무 위반, 4대보험 체납, 최저임금법 위반,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을 곤란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포기하는 경우

□ 분쟁 해결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예규와 “발주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 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